

우리복지관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5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장

I 모집 분야

□ 채용분야

구분	분야	인원	주요업무	비고
기간제 근로자	4급 제공인력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 도전적행동 지원계획 수립, 과정평가 등이용자 돌봄 제공이용자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 임용조건

- 계약기간: 채용일 ~ 2027. 5. 31.(사업 협약기간 만료시까지)
 - ※ 우리복지관 위수탁 기간(~2026. 12. 31.) 만료 시 위수탁 법인 변경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
 - ※ 사업 해지 등 사업 협약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
-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지: 우리복지관(제주시 산천단남길 40)
- 보수수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전문수당 등

II

응시자격 및 가점기준

□ 공통요건

구분	내용	비고
공통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성별 : 제한없음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도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분야별 자격기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개별 제공기관 인력기준에 충족하는자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가점 기준(우대사항)

구분	대상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면접 만점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면접 만점 5%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 시 ①→③ 순으로 우대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며 접수시 해당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III 채용 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공고	26. 05. 04.(월) ~ 26. 05. 15.(금)	
원서접수	26. 05. 04.(월) ~ 26. 05. 15.(금)	
서류전형	26. 05. 18.(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05. 19.(화)	
면접시험 (인성·역량 면접)	26. 05. 21.(목)	
최종합격자 발표	26. 05. 26.(화)	
임용	26. 06. 01.(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및 우리복지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전형	제출서류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방법: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 적격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바를 제외한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장소: 우리복지관(제주시 산천단남길 40) · 면접방법: 개별 또는 그룹면접(블라인드 면접) · 합격배수: 선발예정 인원 이내 · 면접 평정요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공적책무성 등</th> <th>이해력·지식수준</th> <th>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th> <th>인성 및 직업관</th> <th>창의성 및 전문성</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20</td> <td>20</td> <td>20</td> <td>20</td> <td>100</td> </tr> </tbody> </table>						공적책무성 등	이해력·지식수준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인성 및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배점	20	20	20	20	20	100
공적책무성 등	이해력·지식수준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인성 및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배점													
20	20	20	20	20	100													

○ 통지방법: 우리복지관 홈페이지 공시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① 공적 책무성, 우리복지관의 목적성 부합 여부(20점)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④ 인성과 직업관(20점) ⑤ 창의성 및 전문성(20점)	◦ 평점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 취약계층(①→③)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임 용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과 근로계약 체결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IV

지원서 접수

□ 제출 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원서 [서식1] 자기소개서 [서식2] 직무수행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 [서식4] 주민등록 초본 자격(면허)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로 발급 제출 · 개명·병역사항 포함 제출 - (자격증 사본) 보유한(1급, 2급) 자격 모두 제출
해당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경력 증명서*(경력자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 경력 증명서 제출시 필수 첨부)-경력자 필수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발급) 장애인 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재직/경력 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추가제출 서류 불인정
최종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 표시)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기타 요청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관련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결격사유) 확인용

※ 자격(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 접수 방법

○ 전자우편(woori-7587942@naver.com)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우리복지관 1층 통합사무실 경영지원팀(제주시 산천단남길 40)

※ 방문접수 평일(월~금 09:00~18:00)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V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직·간접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 시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 가림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합격은 즉시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사유: 채용 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 채용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복지관 경영지원팀(070-8808-25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격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